2025 장르별 거점 지원사업 안산거리예술아트마켓 컨테이너 임차 용역

-과업내용서-

2025. 7.

I 과업 개요

□ 추진목적

 2025 장르별 거점 지원사업 안산거리예술아트마켓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컨테이너 임차 설치 등의 과업을 전문적인 기술 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사 선정

□ 과업개요

- (용역명) 2025 장르별 거점 지원사업 안산거리예술아트마켓 컨테이너 임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0. 25.(토)
- (추정금액)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 ※ 설치 운영 철수 등 운영 전반에 드는 비용 모두 포함
- (계약방법)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
- o (주요내용) 컨테이너 제반설비 설치, 운영, 관리 및 철거
- □ 행사개요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행사명) 2025 장르별 거점 지원사업 안산거리예술아트마켓
 - **(행사기간)** 2025. 10. 23.(목) ~ 10. 25.(토) / 3일간
 - ※ 국가재난, 기상상황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해 행사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행사장소)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
 - (주최,주관) 안산시, (재)안산문화재단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Ⅱ 과업의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5 장르별 거점 지원사업 안산거리예술아트마켓 컨테이너 임차 용역 과업 수행을 위해 과업의 범위와 수행 지침을 안내하는 것으로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천재지변, 정부지침 등에따라 과업의 내용 및 범위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항

- O 용어 정의
 - 1) "과업"이란 '2025 장르별 거점 지원사업 안산거리예술아트마켓 에 설치되는 컨테이너의 임차, 운반, 설치, 보수, 철거, 관리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 2) "발주처" 란 재)안산문화재단을 말한다.
 - 3) "계약상대자" 란 2025 장르별 거점 지원사업 안산거리예술아트마 켓 컨테이너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과업 내용

- O 컨테이너
 - 1) 컨테이너 색상은 용접공정 완료 후 이물질 제가하며 백색으로 하며 컨테이너 내부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모든 전기 설비 자재는 KS기준에 의한 자재를 사용한다. 등기구는 레일등(220V, 20W, 천정 고정)를 2개 이상 설치한다. 스위치& 누전차단기 겸용 20A이상 멀티 콘센트를 설치하며, 2구 콘센트는바닥에서 1800mm 이상 높게 시공한다.
 - 4) 바닥은 크로스 멤버(CROSS MEMBER)위에 21MM 방부목을 틈이 없이 깔고 크로스 멤버에 태핑볼트(TAPPING BOLT 12mm)로 고 정하고 오일스텐 시공한다..

내부천정에 결로가 없는 단열제 및 천정 누수 방지 소재로 되어 있어야 된다.

천정은 등기구의 고정하중을 견디며 처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5) 태풍이나 우천 시 강풍과 빗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설치됨을 확인하고 안 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O 착 수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산출내역서, 설치인력 현황, 비상연락 체계 등 포함)를 사업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산출내역서에는 운반비, 설치비, 유지관리비, 철거비, 원상복구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금액이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설치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 위치, 수 량, 방법 등의 내용을 발주처 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 시 본 과업의 진행과정을 수시보고 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이 발생할 시 적극 검토하고 대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과업수행 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6) 발주처는 과업 착수 전 또는 과업 수행 중에 당해 과업수행에 있어서 인적 구성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7) 임차 품목, 수량, 임대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변경금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 정산한다.

- 8)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하여 야 한다.
- 9)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과업 에 착수하여야 한다.

O 운 영

- 1) 계약상대자는 시설 예비 물량을 확보하여, 시설 설치 후 손·망실 시 즉시 보수(교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는 유지보수에 대한 제반경비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남은 예비물량에 대해서는 소요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 또한소요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 2) 임차기간 뿐만 아니라 시설 운반・설치・이동・철거 시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시설의 안전성 부족이나 관리부실(임차기간 및 시설운반・설치・이동・철거를 포함한 사전 설치 기간)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민・형사상)을 지도록 한다. 이로 인한 보상 및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설치·철거

- 1) 발주처 필요에 따라 이동 및 재설치를 요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 2) 시설 설치 시 운반 및 설치, 이동 등에 따른 행사장소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3) 시설 설치 및 철거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납품 전 설치장소에 대한 사전답사를 통하여 이동 경로 및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내용을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4) 바람과 기상 등의 영향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악기상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시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내용을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5) 임차기간 만료 후 철거 시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6) 사전에 설치할 컨테이너의 규격, 사양 등을 미리 제출하여 발주 처의 승인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O 품질

- 1) 외형이 깨끗하고 안전한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 임대물품은 최 상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제품이 납품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주처에서 시정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O 검수

- 1) 시설물 설치 시 담당자의 검수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설치수량 및 설치위치, 설치장비의 이상여부(정상가동 등)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 2) 검수 시 설치 물품에 대한 하자 또는 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 보 와 후에 설치하도록 한다.

1. 기본원칙

| 본 과업은 제안서, 추가협상안, 과업내용서 등을 포함하여 예산회 계법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
| 과업 수행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짐 |
|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 본 내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음 |
| 계약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 과업 수행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장비의 보관 등 관리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 수행사가 발주처 시설물 등에 손해 를 주었을 경우 직접 원상복구 해야 함 |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작물의 판권, 특허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사가 진다. |
| 사업비 정산은 계약체결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발주기관의 지급 의무는 없음 |
| 용역 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저작권, 소유권, 지적재산권, 사용권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시 과업 수행자는 |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2. 과업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 과업 수행사는 계약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함
 □ 과업 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사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은 적극지원
 □ 과업 특성상 과업내용 변경 등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 목적의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함.
 □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시 과업 수행사는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함
- □ 과업 수행사는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 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과업 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예산 변경이 필요한 사항
 - 사업 세부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 사업 비 범위 안에서 예산집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승인 요청
 - 과업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 단, 기존 참여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함

3. 이행,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과업 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두 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
|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이 보아고한 도 |
|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용역수행 중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타사에 누설하지 못함 |
| □ 과업 수행사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업 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사가 책임을 짐 |
| □ 관람객 등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점검하여야 함 |
|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힝 경우 과업 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함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준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산업재하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 |

4. 예산 산출에 관한 사항

|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
| 반드시 품목별 단가와 수량을 명확하게 산출해야 함 |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식, 1세트 등의 그룹 산출 금지 |
| 산출내역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하는 기획 구성을 기준으로 비용과 |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과업 협상 시 항목별 세부 산출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

- ※ 각 구성 요소별 단위별 단가를 반드시 제시할 것(가격 시담 근거자료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작성)
- ※ 서류 제출 후 변경 불가
- ※ 예산편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 예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 ※ 원가 산출 근거자료는 차후 요청 시 제출해야 함

5. 계약의 해지

- □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정부지침 등으로 인해 과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 기관에서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변경계약 체결하며 부득이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계약 해지
- □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 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사에 과업 중단 지시, 기지 급된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용역 대가 지급

□ 용역대가의 지급

대가금은 용역 결과보고서 등 성과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예정
 □ 용역성과물 제출
 ○ 착수 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및 인력투입현황, 용역수행공정표 등
 ○ 완료 시: 완료계, 보안서약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진대지(현장설치도)
 7. 분쟁해결
 □ 상기 명시된 합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예규와 발주기관의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진행한다.

□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법원

□ 과업 수행 중 분쟁이 발생할 시 과업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붙임 컨테이너 수량 및 참고이미지 1부.

으로 하다.

붙임

컨테이너 수량 및 참고 이미지

| | 운영 일수 | 수량 | | 7시기 구대 | |
|---------------------|----------|-------------------|---------------|----------------|----|
| 일자 | | 컨테이너 (3× 3) | 컨테이너 (3×6) | 전기·조명 설치 여부 | 비고 |
| 2025.10.2 3.~25. | 3 | 32 | 6 | 0 | |



